

## 국경 없는 법조인들의 비전<sup>1)</sup>

The Vision of 'Lawyers without Borders'

이국운(한동대 교수, 법학부)

I. 예수를 위해 법률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II. 탈근대적 상황과 법, 그리고 기독법률가

III. 세 개의 전선

IV. 기독법률가들의 사명

V.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VI. 기독법률가의 자기정체성 문제

## abstract

The vision of 'lawyers without borders' is a slogan for the lawyers who want to be active Christian lawyers in this post-modern era. Beyond the boundaries of nation-states, the process of legal reorganization(a legal version of postmodernization) is rapidly going on, and the legal service in Christian perspective is increasingly needed. Facing with the important legal issues like the conflicts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relating to their cultural identities, Christian lawyers must be able to overcome many barriers, which are caused ethnicity, language, gender and religion, and resolve a number of unprecedented matters with the innovative application of legal knowledge. In order to do it, I claim that the vision of 'lawyers without borders' should be shared among the Christian lawyers and intellectuals in Korea as soon as possible. The realization of the vision includes the construction of jurisprudence and legal practice based on Christianity, which demand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networks for Christian lawyers today as well as the academic and educational centre for Christian lawyers tomorrow. I am sure that the sincere effort of vision holders will transform the lawyer's self-identity from lawyer-merchant or legal technician in the national level to lawyer-statesman or legal servant in the global level and reestablish their self identity as Christians who are lawyers instead lawyers who are Christians.

## I . 예수를 위해 법률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법률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오랫동안 남모르는 자격지심에 시달려 왔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법과 법률가의 사회적 중요성은 날로 심대해져 가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법과 법률가가 가지는 영속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도무지 자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성경은 명백하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언한다.<sup>2)</sup> (율)법은 기껏해야 죄를 깨닫게 할 뿐 그것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부패하여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럴진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율)법과 법률가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속적인 가치가 부여될 수 없음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가 아닌가?<sup>3)</sup>

- 1) 이 글은 1999년 7월 9일 사랑의 교회 소망관에서 열린 '기독 법조인의 소명 포럼'에서 발제하고, 사랑의 교회 법조선교회가 펴낸 '소명'이라는 문집에 실렸던 것을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 2) 예컨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 2:16). 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19~20) 등.
- 3)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율법과 법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제기는 곧바로 강력한 반론에 부딪힌다. 하나님이 제정자인 율법이 그러할진대, 인간이 제정한 법(人定法)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상에 대한 성찰은 기독법률가들의 이러한 자괴감을 더욱 심화시킨다. 하루 종일 그들이 만나는 것은 돈 폐인 사람들, 강도와 사기꾼, 파렴치범, 파탄된 가정의 남편과 아내, 브로커, 눈물도 없는 보험회사들일 뿐, 도대체 예수를 따르는 삶을 나눌 만한 인격자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가가 되려할 때 그들을 매혹시켰던 것은 분명 속물적인 출세의욕이 아니라 ‘공공선을 향한 헌신’이라는 기독교적인 대의(大義)였음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러한 출발점을 되새기는 것이 고통스러울 만큼 기독법률가들의 영혼은 이미 속물적 인간들 사이에서 저울추를 만지작 거리는 법률가—상인(lawyer-merchant)의 일상에 깊이 찌들어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기독법률가들은 성(聖)과 속(俗)의 이원론을 좇아 법조(法曹)의 좁은 틀 속에 자신을 가두는 것으로 삶의 방책을 삼는다. 주일 아침, 그들은 법률가의 옷을 벗고 평범한 자연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들은 다시 저 휘황한 ‘고시(高試)의 휘장’을 열고, 결코 영속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할 법률가-상인의 일상을 반복하기 위해 말없이 돌진한다. 그리고, 마치 법조타운의 거대한 법원—검찰청 건물들처럼, 자신들을 둘러싼 속물적 인간들 한가운데 외롭게 군립한다. 하지만 끝없이 반복되는 소송업무에 질려 다시금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평범한 자연인으로 돌아오려 할 때 그들에게는 문득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도대체 예수를 위해 법률가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주일과 다른 날들을 가르는 이원론적 기교 이외에 기독법률가들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법률가는 이등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부른 패배주의로 직행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말하듯이 예수를 위함과 타인을 위함이 진정으로 상통하는 것이라면,<sup>3)</sup> 타인을 위함으로써 예수를 위하는 일 가운데 법률가들의 고유한 역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로

에게 총구를 겨누는 극심한 분쟁상황을 상정해 보자. 법률가들은 구원의 진리를 설파하여 분쟁당사자들을 감동시킬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당사자들의 주장을 법적 언어로 번역할 것을 제안해 볼 수는 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분쟁은 잠시나마 중단될 것이며 기회를 틈타 법률가들은 법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감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성공하는 예는 많지 않겠지만 단지 분쟁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것은 압도적인 화력의 무기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확인하건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들어 예수를 위해 법률가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거나 또는 비겁한 일이다. 타인을 섬기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인 한, 법률가의 자격은 예수를 위해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는 특수한 직분을 부여받은 것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자격지심의 원인은 필연코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어리석게도 그러한 직분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거나, 비겁하게도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기가 두려워 짐짓 외면하는 것이거나,<sup>4)</sup> 이런 생각에서 나는 위의 질문에 대한 기독법

- 4) 예컨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 25:40).
- 5)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은 것이며, 따라서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는 종교개혁자의 선언을 들어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 “...그러므로 지금 사제나 주교나 교황과 같이 ‘영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과 직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의 집행을 맡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크리스챤들과 아무 차이가 없고 우위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세속적인 관헌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칼과 채찍을 가진다(롬 13:4). 구두수선공, 대장장이, 농부는 각기 자기들의 일과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다 성별받은 사제와 주교와 같다. 그들은 각기 자기의 일이나 직무에 의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섬기지 않으

률가들의 답변이 분명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임을 확신하면서, 한 걸음 나아가 기독법률가들에게 스스로에게 제기하는 질문의 내용을 바꿀 것을 제안한다. “예수를 위하여 법률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맞서야 하는 핵심적인 질문은 어디까지나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은 기독법률가들의 이러한 근거 없는 자격지심을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첫째, 그러한 자격지심이 법과 법률가의 준거를 국민국가(nation-state)에서 찾으려 했던 서구 근대문명의 정치적 사고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며, 둘째로 그 극복에 관하여 이미 시작되고 있는 탈근대화(postmodernization)<sup>6)</sup>의 흐름 및 탈근대적 법률가에 대한 시대적 요청

---

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몸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섬기는 것과 같으며, 이렇게 하는 것은 공동체의 육적인 또는 영적인 복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이다...” (마르틴 루터, “독일 크리스챤 귀족에게 보내는 글”,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논문』, 지원용 역, 컨콜디아사, 1993, 33~34면에서 인용)

- 6) 여기서 탈근대화란 근대적 상황을 의식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 환경 속에 삶을 위치 지우려는 노력이다. 앞선 글에서 나는 일종의 사회정학(social statics)적 입장을 취하여 근대적 상황과 근대화의 개념을 ‘비인격적-비대면적 인간관계’와 ‘자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적 상황과 그 속에의 사회적 적응으로 개념화한 바 있다.(이국운, “정치적 근대화와 법”, [법철학연구] 제2권, 1999) 하지만 탈근대화의 개념화를 위해서는 나아가 일종의 사회동학(social dynamics)적 입장이 덧붙여져야만 한다. 예컨대 이런 입장에서 근대화란 ‘비인격적-비대면적 인간관계’와 ‘자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를 달성함과 동시에 그 속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탈근대화가 그 반대 방향의 움직임들, 즉 역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극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근대적 상황을 타개하고 다시 그 속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오늘날 포스트모던적이라고 운위되는 사회현상들이 대개 그렇기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결국 다음의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를 가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 첫째, 정보혁명론과 같이 비인격적-비대면적 인간관계를 인격적-대면적인 그것으로 대체하려는 흐름이고 둘째, 종교적 근본주의와 같이 자족적 존재로서의 인간이해를 비자족적 존재로서의 그것으로 대체

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며, 세째, 이러한 요청에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기독법률가집단과 기독공동체 전체가 ‘국경 없는 법률가들’(lawyers without borders)의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나의 실천적인 관심은 어디까지나 세 번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위해 법률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새로운 질문에 정면으로 맞서게 함으로써, 저 지긋지긋한 특권의식과 자격지심으로부터 우리의 기독법률가들을 해방시켜 진정으로 예수를 위해 타인을 섬기게 할, 현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 II. 탈근대적 상황과 법, 그리고 기독법률가

오늘날 한국의 기독법률가들에게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은 필수적인 요청이다. 그 이유를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탈근대적 상황의 법 사회학적 함의를 숙고하는 것에서부터 한 번 따져 보자.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탈근대적 상황은 무엇보다 국민국가를 단위로 하여 국가내법(nation-state law)과 국가간 법(inter nation-state law)으로 분화되었던 법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급격하게 와해되는 현상에서 드러난다. 다시 말해 근대화 과정에서 과거 가족·장원·부족·교회·길드·도시·조합

---

하려는 흐름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사회변화가 반드시 이 양자 중의 어느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종의 베터 값으로 사회변화가 진척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근대화든 탈근대화든 인간이 자기자신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으로 인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과 같은 집단들에 중첩적으로 속해 있던 인간들이 국민국가의 구성원들, 곧 국민으로 편입되고, 그와 동시에 여러 집단들이 수행했던 법공동체로서의 기능이 대부분 국민국가에 집중되었다면,” 탈근대적 상황에서는 정반대로 국민국가의 안팎에 다양한 종류의 법공동체가 생성되어 일종의 다원적—중층적 법시스템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다. 특별히 최근에는 지구적 규모로 성장한 자본주의에 정보혁명의 물결이 덧붙여짐으로서,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법공동체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법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세계—국가—지방(global-national-local) 차원의 중층적 구조로 급속하게 전환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sup>7)</sup>

이처럼 법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세계적 규모의 법적 투쟁이 다양한 차원에서 벌어지게 될 경우, 법률가들의 활동공간 역시 탈국민국가적 차원으로 확대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의 내용이 단지 활동공간의 확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적 준거로서 국민국가의 역할이 약화된다는 것은 곧 국민국가의 권위에 기반한 법전이나 판례들이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서 과거만큼 독점적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법’의 전문적 해석가로서의 근대적 정체성을 여전히 고수하려는 법률가들보다는 다양한 법적 지식들을 결합해 문제해결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가들, 즉 ‘존재해야 할 법’에 대한 전문적 변증가로서의 법률가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와같이 법률업무의 중심이 송무에서 정책으로, 사법변론에서 입법변론으로 옮겨가고, 그에

7) 많은 책이 있지만 표준적인 논의로 잔 프랑코 풋지, 『근대국가의 발전』(박상섭 역, 민음사, 1995)을 볼 것.

8) 개괄적인 논의로 M. 이젠 카트시, 『디지털 시대의 법제이론』(김유정 역, 나남출판, 1997)을 볼 것.

따라 법치주의의 중심이 소극적인 법준수가 아니라 적극적인 법실현으로 옮겨가는 것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법사회학적 변화의 기본 흐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고 또 그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경계 및 법현실과 법규범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사회 내의 다양한 이익을 법적 담론 속에 수용하여 공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형성해 낼 역량 있는 법률가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sup>9)</sup>

최근의 법학 교육개혁 논의에서 나타나듯 새로운 시대의 법률가들에게 요구되는 자질로서는 흔히 (1)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고 세련된 인식 (2)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문제해결능력 (3)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4) 투철한 서비스 정신과 민주적 책임윤리 등이 거론된다.<sup>10)</sup>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법실천의 정당한 근거지움을 위해 국민국가의 틀을 넘나들 수 있는 도전정신과 용기이다. 바로 이 점에서 나는 기독법률가들이 탈근대적 상황을 혜쳐나감에 있어서 대단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독신앙과 관련하여 실정법을 넘어서는 지점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을 구하려는 열망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유리함은 논리적으로 다른 신앙을 가진 법률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며, 그렇기에 법과 법률가의 문제에 관련해서도 종교적 근본주의의 위험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탈근대적 상황이 기독법률가들에게 제기하는 질문은 그대로 남는다. “예수를 위해 법률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9) 최근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법학 교육개혁 논의는 이런 시각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에 관한 나의 생각은 이미 다른 곳에서 괴력한 바 있다.(이국운, “한국의 법률가집단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현상과 인식』, 1999년 겨울호)

10) 대통령자문 새교육 공동체위원회, “법학교육 제도개선 연구”, 1999, 23면 이하.

### III. 세 개의 전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탈근대적 상황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법적 분쟁의 축들을 전망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가란 어디 까지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극심한 투쟁이 촉발될 수 있는 세 개의 새로운 전선과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탈근대적 상황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사이에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 국민국가가 존재한 경우에는 국가주도권 아래 내외의 소득 재분배 활동을 통해 어느 정도 양자의 갈등이 순화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예컨대 내부적으로는 복지국가적 개입정책을 통해, 외부적으로는 국가간의 구호원조를 통해 다소나마 갈등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의 제한없는 유통을 보장하려는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가치 아래 추진되는 한, 탈근대적 상황은 곧바로 이런 종류의 갈등완화 기제를 포기하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갈등이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수준에까지 조직적으로 격화되게 될 것은 명백하다. 국제통화관리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개방되었던 지난 수년 간, 빈부의 격차가 현격하게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로 계층간의 위화감이 위험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관한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sup>11)</sup>

둘째, 탈근대적 상황에서 이와같은 빈부의 갈등은 곧장 我와 非我的 정체성 투쟁(identity struggle)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국

11) 이런 현상을 세계적 차원의 금융자본주의화로 설명하고 있는 글로, 워너 본펠드, 존 홀러웨이 편,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이원영 역, 갈무리, 1999)를 볼 것.

민국가의 약화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의 격화만이 아니라 문화적 자기정체성(cultural self-identity)의 위기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근대적 개념의 국민국가는 근본적으로 국민(nation)으로 구성된 국가(state),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의 주권(sov ereignty)에 복종하는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의 주권에 복종하는 한, 민족, 인종, 종교, 언어 등의 차이는 국가적 삶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도 야기하지 않는다. 바로 이 점에서 국민국가의 이념은 정치에 있어서 모든 비합리적, 우연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합리주의적 정치건축술의 정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2)</sup> 하지만 탈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계속되는 국민국가의 약화 현상은 그러한 합리적인 방식의 정치통합이 근본적으로 국민국가의 경계선을 중심으로 안과 밖, 동지와 적을 나누는 정치적 피아구분의 전략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제 그러한 공식적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되는 상황에서, 나아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이 누구에 의해서도 조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중 전체가 민족, 인종, 언어, 종교 등의 비합리적인 경계선을 따라 투쟁의 축을 구축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선택이다.<sup>13)</sup>

이러한 정체성 투쟁을 종식시키는 궁극적인 방법은 안과 밖, 동지와 적의 경계지움에 의존하지 않는 세계국가(world-state)를 창설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따르더라도 이러한 국가의 성립을 위해서는 먼저 세계적 규모의 인류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그것이 스스로의 한계를 자각하여 변혁하는 변증법적 지양의 과정, 즉 ‘부정(否定)의

12)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국가권력의 이념사』, 이광주 역, 민음사, 1990.

13)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새뮤엘 헌팅턴은 어떤 의미에서 이와같은 단정을 전제로 21세기의 세계상을 그려낸 바 있다. 그의 『문명의 충돌』(이희재 역, 김영사, 1996)을 볼 것.

부정(否定)’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sup>14)</sup> 문제는 철학자의 머릿속에서 가 아니라 일반대중의 일상 속에서 我와 非我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공포스러운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그들은 자연스레 비합리적인 경계선을 따라 투쟁의 축을 구축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빈부의 투쟁은 정체성 투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탈근대적 상황에서 이와같은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 해결하기 힘든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위의 비합리적인 요소들 가운데 문화적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역시 종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르네 지라르가 말한 바 희생제의(rite sacrificiel)와 같은 방식으로 我와 非我를 가르는 폭력의 문제인 문화적 자기 정체성의 차원에 현세 초월적인 ‘성스러움’의 차원을 연결시켜 주는 핵심기제인 까닭이다.<sup>15)</sup> 따라서 민족, 인종, 언어, 종교 등의 비합리적인 경계선을 따라 투쟁이 심화되면서 종교적 근본주의가 득세하는 것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로 인해 무차별적인 폭력이 난무하는 일종의 종교전쟁이 촉발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 그러한 파국은 면하더라도 성(聖)과 속(俗) 사이의 현실적 균형을 유지하는 사회적 기제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그러한 균형이 한 번 깨지기는 쉽지만 다시 복원하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 정체성 투쟁과 종교적 근본주의를 극복하고 성속의 균형이 회복되기까지 종교적 극단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성전(聖戰)과 극단적 세속주의에 의한 주도되는 反성전이 혼란스럽게 되

14) 이런 낙관적 전망의 보기로, 헤겔, 『법철학』(임석진 역, 지식산업사, 1989) 및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이상훈 역, 한마음사, 1992)을 볼 것.

15)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 박무호 역, 민음사, 1997, 특히 1장.

풀이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sup>16)</sup>

#### IV. 기독법률가들의 사명

그렇다면 탈근대적 상황에서 전개될 이러한 세 개의 새로운 전선과 관련하여 기독법률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짚어 두어야 할 것은 위와 같은 추상적인 전선들이 기독법률가의 직업적 일상에 있어서는 대단히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탈근대화의 흐름이 진척되면 될수록 기독법률가들은 매순간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에서, 사회전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의뢰인의 문화적 정체성 사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양심과 법률가로서의 직업윤리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의 요구들이, 주일과 다른 날들을 가르듯 이원론적 기교로 외면할 수 있을 만큼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생각에서 나는 그와 같은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 내기 위해 우리의 기독법률가 집단이 하루바삐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우리의 기독공동체를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sup>17)</sup>

---

16) Benjamin R. Barber eds., *Jihad vs. McWorld-How Globalism and Tribalism Are Reshaping the World*, Ballantine Books, 1996.

17) 짐작하듯이 ‘국경 없는 법률가들’(Lawyers without Borders)라는 용어는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국경 없는 의사회’(Medecines sans Frontieres, Doctors without Borders)에서 암시를 받은 것이다. 참고로 이 모임의 행동강령을 소개한다. “첫째, 국경 없는 의사회는 가난과 자연적 혹은 인위적 재난, 전쟁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에 관계없이 차별하지 않고 돋는다. 둘째, 국경 없는 의사회는 보편적 의료 윤리와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이란 말 그대로 그 동안 국민국가의 경계 속에 안주해 왔던 기독법률가들의 활동무대를 탈근대적 상황에 적합하도록 확장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새로운 사태 전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최소한 그런 능력을 갖추려는 용기를 가지는 것일 수밖에 없다. 단언컨대, 정치적, 경제적,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기술적 장벽을 넘어 국경을 넘나들며 혁신할 수 있는 용기와 실력을 갖추지 못한 법률가는 탈근대적 상황에서 예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률가의 직업이란 원래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분쟁 속에 고통 당하는 의뢰인을 돋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의뢰인들을 섬기려 함에 있어서 장벽을 넘을 용기와 실력을 갖추지 못한 법률가는 당연히 아무런 가치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은 우리의 기독법률가들에게 탈근대적 상황에 적응하여 타인을 섬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시 배우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일종의 ‘겸손한 용기’를 요청한다.<sup>18)</sup>

---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의 이름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실천하며 방해받지 않고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요구한다.셋째, 국경 없는 의사회 차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직업윤리를 지키며, 어떤 정치, 경제, 종교적 권력으로부터라도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맹세한다.넷째, 국경 없는 의사회 회원들은 차원봉사자로서 자신들이 수행하는 임무의 위험성을 인지하며, 국경 없는 의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외에 자신이나 수령자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갖지 않는다.”(월간 《지구촌》, 2000년 8월호) 이 모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sf.org>이다.

18) 이런 차원에서 기독법률가들에게 새로운 법적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영어와 컴퓨터학습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일까?

물론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장벽을 넘을 실력을 갖추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비전을 실현하는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기독인들에게 주어진 총체적 선교, 총체적 복음화의 사명, 즉 개인적-공동체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밝히 드러내야 할 사명<sup>19)</sup>을 기독법률가들 역시 수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이 ‘복음의 법화’(legalization of the Gospel)와 ‘법을 통한 복음화’(evangelism through law)의 과제를 동시에 겨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복음의 법화’란 정의와 평화의 복음을 다양한 콘텍스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언어와 형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법을 통한 복음화’란 그러한 이론적 작업의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분쟁의 현장에 뛰어 들어 공동체적 삶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 없는 법률가’의 비전을 가진 기독법률가의 삶에 있어서 이 양자는 이론과 실천 사이의 변증법적 긴장을 구성하는 두 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전자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지배적인 법적 담론들이 복음을 담기에 충분한 것인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음미하여 ‘기독정신에 바탕한 법학’(Jurisprudence based on Christianity)을 건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권리(right), 책임(responsibility), 의무(obligation), 소유(possession), 법인(judicial person), 국가의 법적 권위(legal authority of the state), 권력의 분립(separation of power) 등은 그처럼 철저하게 재음미되어야 할 개념들이다.<sup>20)</sup> 또한, 후자에 관해서는 무엇보다 현시대의 지배적인 사조와 정세를 판단하여 실현가능한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삶의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각 영역별로 '기독정신에 바탕한 법실무' (legal practice based on Christianity)를 건설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컨대, 사회보장체계, 국제인권, 다국적 금융, 사이버월드, 지방자치, 조세제도, 대규모조직의 법적지배구조, 통일 이후의 법적 통합 등은 하루바삐 초보적인 입장정리라도 시도되어야 할 주제들이다.

이 두 작업이 동시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이 보다 이론적인 사명을 가진 기독법학자들과 보다 실천적인 사명을 가진 기독법조인들의 긴밀한 공동작업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단번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이와같은 공동작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대단히 중요한 시작이 아닐 수 없다. 기독정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법학자와 법률가들의 연합은, 다분히 직업적 이해관계에 얹매여 있는 법률가 집단 내부의 할거주의적 경향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법적 관점의 통합화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관점들의 통합은 사람들의 통합을, 그리고 법률가들의 통합은 의뢰인들의 통합을 촉진한다. 그렇다면 기독법률가들 내부의 긴밀한 상호협동이 세계—국가—지방을 잇는 다양한 차원에서 기독정신에 바탕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촉진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sup>21)</sup>

- 
- 20) 아직 완숙한 단계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20세기 후반의 서구, 특히 미국적 상황을 전제로 이에 관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도들이 발견된다. 예컨대 프란시스 쉘퍼, 『기독교 선언』(김진홍 역, 생명의 말씀사, 1995)과 존 화이트헤드, 『표류하는 미국』(진웅희 역, 두레시대, 1994)을 볼 것.
- 21) 현재 상황에서 이 분야의 선도적인 조직으로 아직 부족하기는 하나 미국의 Christian Legal Society와 한국의 예수를 사랑하는 변호사모임(Christian Lawyers' Fellowship)을 들 수 있다. 이 모임들의 홈페이지 주소는 각각 <http://www.christianlegalsociety.org>와 <http://www.clf.co.kr>이다. 그밖에 영

기독법률가집단 내부의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기독시민사회의 성숙과 연결시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은 본질적으로 법의 영역을 넘어서는 헌신을 기독법률가들에게 요구한다. 앞서 말했듯이 탈근대적 상황에서 법률업무의 중심은 급속하게 송무에서 정책으로, 사법변론에서 입법변론으로 옮겨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모범적인 법률가상은 '존재하는 법'의 전문적 해석가로부터 '존재해야 할 법'의 전문적 변증가로 변화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실력 있는 법률가들에게 '법률가—상인' 또는 '법적 기술인' (legal technician)으로서가 아니라 '법률가—정치가' (lawyer-statesman)로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sup>22)</sup>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독법률가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이와같은 과제를 '법을 넘어서는 복음화' (evangelism beyond law), 즉 법을 통해 활동하되 법에 매이지 않고, 도리어 법을 넘어서는 회생 속에서 은총과 정의와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드러내야 할 과제로 명명하면서, 나는 진정한 기독교적 '법률가—정치가' 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으로 자신의 정치적 소명과 자신에의 정치적 지지를 분리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정치적 소명이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하라는 성경적 가르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되, 그러한 종교적 아이덴티티에서 곧바로 자신에의

국에도 Lawyer's Christian Fellowship이 결성되어 1996년 이후 정기적인 학술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성과를 모은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Paul R. Beaumont ed., *Christian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and Legal Philosophy* (Paternoster Press, 1998)가 있다.

22) 미국법률가들을 대상으로 이런 법률가—정치가의 이상의 몰락을 개탄하고 있는 글로서 Anthony T. Kronman, *The Lost Lawyer-Failing Ideals of the Legal Professi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을 볼 것.

정치적 지지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비롯되는 공의 애의 열정과 인격적 고결성(integrity), 그리고 정책의 타월성을 가지고 승부하려는 법률가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치애의 기독교적 소명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독교적 법률가—정치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원칙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첫째, 언제나 문제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약자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들의 편에서 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점. 둘째, 그렇게 하기 위해 제도적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직업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법치주의가 언제나 패권주의적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 요컨대, 빛의 자식들의 우둔함과 어둠의 자식들의 간교함을 모두 피할 수 있는 성숙한 균형감각이 요청된다는 것이다.<sup>23)</sup>

## V.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상에서 말했듯이 빈부의 갈등이 정체성의 갈등으로, 정체성의 갈등이 다시 성속(聖俗)의 갈등으로 나날이 증폭되어 갈 탈근대적 상황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독정신에 바탕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할 다수의 기독법률가들은 대단히 긴급한 요청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요청에 답하기 위해 지금 우리의 기독법률가들과 기독공동체 전체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리 기독공동

---

23) 라인홀드 니이버, 『빛의 자식들과 어둠의 자식들』,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1995, 특히 4장.

체가 이러한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첫째로 지난 1세기 동안의 급속한 복음화를 통해 1천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기독지식 중산층의 시민 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다는 점이 그러하고, 둘째로 비록 그리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이 기독공동체를 거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능한 기독법률가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 그러하며, 셋째로 1세기에 걸친 외세(일본과 미국)의 지배의 결과로 대륙법과 영미법이 체계적으로 교차하는 비교법적 환경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양자를 지양해 나가려는 열망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그러하고, 넷째로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민족의 디아스포라가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에 적합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그러하다.<sup>24)</sup>

이처럼 유리한 조건들을 선용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나는 무엇보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기독법률가들이 구체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사상적-조직적-교육적 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 사상적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을 조화시킬 수 있는 소수의 헌신에 의해서도 성공적으로 시도될 수 있다. 예컨대 기독법학자 및 기독법조인들의 정례적인 연구발표회를 조직하고, 그 결

24) 비교법사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둘러싼 이와같은 상황은, 정보혁명이라는 또다른 근본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11~12세기 북부 이탈리아에서 일종의 법적 혁신이 일어날 때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12세기 볼로냐 대학에서 일어난 법학교육의 방법론적 혁신방안이 오늘날의 시점에서 다시금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보라.(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Kuyper Kuk-Woon Lee, “The Ennobling of Legal Education for the Global-Cyber World: Insights from the European Medieval Experience”, 2001년 4월 정보통신부, 한동대학교, 존마샬로스쿨, 한국과학기술원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

과를 공론에 불일 수 있는 정기적인 지면을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신앙과 학문의 연계자음을 추구하는 기독학문 연구모임들과 동역하거나, 법 및 기타 사회과학 영역의 연구조직들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나마 잘 조직된 높은 수준의 청중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러한 청중없이 사상이 태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25)</sup>

다른 한편, 사상적 거점을 만드는 것과 병행해 조직적 거점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 예컨대, 사이버세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법조 각 지역의 기독법률가들을 네트워킹하는 것은 물론, 사법연수원 및 각 법과대학의 예비법률가들, 재외한인 기독법률가 및 외국 기독법률가조직들, 나아가 법실천에 관련되는 국내외의 시민운동단체들과 일정한 연계를 가지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사상적 거점을 만드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천적 겸중 없이 사상을 형성하다가 자칫 편견의 집적에 머무르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상적 견제 없이 조직을 형성하다가는 자칫 조직의 유지에 만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법률가 집단 내부의 충분한 사상적 부딪힘이 없이, 단지 기독공동체의 대규모성에만 집착하여 의뢰인집단의 무분별한 조직화에 나서는 것은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사상적-조직적 거점을 항구적으로 확보하는 길은 결국 교육적 거점을 확보하는 것에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오늘 날 직업적 법률가를 양성하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법과대학들 가운데 과

---

25) 앞선 세대의 개인적으로 대단히 유능한 기독법학자, 기독법률가들이 어떤 의미에서 완결된 기독교법사상의 단계에로 나아가지 못하였던 것은 혹시 소수나마 이처럼 수준 높은 청중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연 어느 곳에서 기독정신과 법, 기독신앙과 법률가직업 사이의 관계가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고민되고 있단 말인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건대, 사상과 조직을 함께 태어나게 할 교육적 거점을 마련함이 없이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을 실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 그러한 거점이 마련될 경우 사상적 실천과 조직적 실천은 비로소 중심을 찾고 교육적 실천을 매개로 하여 대단히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적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독법률가 집단 및 기독공동체 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단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법리학 분야의 기독교 법사상(Christian legal thought) 및 기독교적 법조윤리(Christian legal ethic), 법실무 분야의 공익법(public interest law) 및 국제상거래—지적재산권법(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법과대학을 건설하고, 그로부터 다양한 학제적·문제중심적·정책지향적 법실천을 감당해낼 수 있는 기독법률가들을 배출해내는 것이 그 것이다.<sup>26)</sup>

---

26) 2000년 7월 한동대학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을 담은 ‘한동국제법률대학원’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HILS)의 설립을 정식으로 인가 받았다. 이 비전의 실현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귀추가 대단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참고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 전문대학원의 비전 선언문의 초안(영문)을 소개한다. <Our vision>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will be the academic center for ‘Lawyers without Borders’, educating global Christian lawyers for the world who embody excellence in both legal academics and moral character, in particular, honesty and service.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will send forth lawyers who are:

- Honest legal practitioners serving the people by overcoming cultural barriers due to ethnicity, language, gender and religion through the Holy Spirit for the glory of God.
- Honest legal experts resolving unprecedented issues in the Cyber world with

## VI. 기독법률가의 자기정체성 문제

지금까지 나는 마치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이 탈근대적 상황에서 기독법률가들에게 주어지는 독특한 사명인 것처럼 말해 왔다. 그러나 진실은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 자신의 신분을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 규정하는 이상,<sup>27)</sup> 기독법률가들은 결코 자신과 자신의 소명을 국민국가의 틀 속에 간한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자기정체성은 원래부터 ‘기독교를 신앙하는 법률가’ (a lawyer who is a Christian)가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직업을 소명으로 받은 그리스도인’ (a Christian who is a lawyer)이었으며, 애초부터 평화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를 좇아 국경을 넘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이었던 것이다.<sup>28)</sup> 그렇다면 위에서 시도한 것처럼 ‘국경을 넘는 법률가들’의 비전을 강조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관한 두 가지 답변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이 글의 맺음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말했듯이 이 비전은 탈국민국가화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생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기독법률가들에게 자신들의 직업적 자기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강제하는 측면을 가진다. 앞서 말했듯이, 주일과 다른 날을 가르는 이원론적 기교만으로는 저 지긋지긋한 특권의식과 자격지심에서 해방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일곱 날 모두를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실력없는 법률가로 전락하는 공포”

---

the innovative integration of law and information technology.

- Honest legal scholars reestablishing the true purpose of legal science and rebuilding the destroyed biblical foundation of law with devotion and sincerity.
- 27)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 3:20)
- 28) 조셉 알레그레티, 『법조인의 소명』, 심동섭, 전재중 역, IVP, 1999, 특히 후기.

(a fear of ‘all day Christian, the worst lawyer’)와 “하루만 헌신하고도 축복받은 기독법률가로 행세할 수 있는 유혹”(a temptation of ‘Sunday Christian, the best lawyer’)의 유혹 속에서 범민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는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을 이 고착된 상황을 깨뜨리는 외부적 충격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비전 앞에 서라면 우리의 기독법률가들은 어쩔 수 없이 탈국민국가적 상황에서 자신들의 직업적 소명을 성경적 관점에서 확보해 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비전은 이처럼 법률가의 직업적 자기정체성을 탈국민국가적 차원에서 이해할 것을 강제함으로써 특권의식과 자격지심의 동시적 굴레에서 기독법률가들을 해방시키는 측면을 가진다. 법률업무의 성격이 변화하고 법률가의 활동 공간이 국가적 차원을 넘어 확대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국민국가적 틀 속에서 확보한 법률가 자격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에 불과할 뿐, 더 이상 특권의식과 자격지심의 원천이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은 기독신앙과 기독정신을 공유하는 다른 나라의 법률가들과의 동역은 물론이려니와, 나아가 자격에 구애됨이 없이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과의 동역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법률가의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또 그 소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한, 그들 역시 하늘에 속한 법률가들이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요약컨대, ‘국경 없는 법률가들’의 비전은 오늘의 시점에서 기독법률가들의 자기정체성 문제에 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외쳐야 할 구호는 매우 간단하다.

“일곱 날 모두를 예수를 위해 헌신함으로 최고의 법률가가 되자!”  
(All day Christian, the best lawyer!)

## 참고문헌

- Anthony T. Kronman, *The Lost Lawyer-Failing Ideals of the Legal Profession*,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 Benjamin R. Barber eds., *Jihad vs. McWorld-How Globalism and Tribalism Are Reshaping the World*, Ballantine Books, 1996.
- Harold J. Berman, *Law and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 M. 이전 카트시, 『디지털 시대의 법제이론』, 김유정 역, 나남출판, 1997.
- Paul R. Beaumont ed., *Christian Perspectives on Human Rights and Legal Philosophy*, Paternoster Press, 1998.
- 라인홀드 니이버, 『빛의 자식들과 어둠의 자식들』, 이한우 역, 문예출판사, 1995.
- 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 박무호 역, 민음사, 1997.
- 말틴 루터, “독일 크리스챤 귀족에게 보내는 글”,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3대논문』, 지원용 역, 컬럼비아사, 1993, pp. 33~34.
- 새뮤엘 헌팅턴,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김영사, 1996.
- 워너 본펠드, 존 홀러웨이 편, 『신자유주의와 화폐의 정치』, 이원영 역, 갈무리, 1999.
- 이국운, ‘한국의 법률가집단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현상과 인식》, 1999년 겨울호.
- 잔 프랑코 풋지, 『근대국가의 발전』, 박상섭 역, 민음사, 1995.
- 조셉 알레그레티, 『법조인의 소명』, 심동섭, 전재중 역, IVP, 1999.
- 존 화이트헤드, 진웅희 역, 『표류하는 미국』, 두레시대, 1994.
- 프랜시스 쉐퍼, 김진홍 역, 『기독교 선언』, 생명의 말씀사, 1995.
- 프랜시스 후쿠야마, 『역사의 종말』, 이상훈 역, 한마음사, 1992.
- 프리드리히 마이네케, 『국가권력의 이념사』, 이광주 역, 민음사, 1990.
- 혜겔, 『법철학』, 임석진 역, 지식산업사, 1989.

---

이국운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음. 1999년~2001년 현재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로 재직중. 주된 관심분야는 헌법이론, 법사학, 그리고 기독교법사상. 주요한 논문 - 「정치적 근대화와 법률가집단의 역할」, 「공화주의 헌법이론의 기본 구상」, 「한국의 법률가집단은 어디로 가야하는가?」 등 다수. 현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공의정치포럼 등에서 활동. 사랑의 교회 대학부 동문인 류선(부인), 정민(아들), 경민(딸)과 함께 살고 있다.